



시 보



제1619호 2023. 11. 13.(월)

고 시

-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----- 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에 따라 신축된 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멸실된 건축물 도로명주소 폐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7일

목포시장

○ 도로명주소

지번 주소	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, 폐지 사유	비고
동명동 7	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79번길 3	2023.11.7.	건물 신축	부여
석현동 911-4	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17	2023.11.7.	건물 멸실	폐지
죽교동 580-360	전라남도 목포시 북향로 128	2023.11.7.	건물 멸실	폐지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313)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(www.mokpo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 11. 7.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지번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층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